

第243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7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0月29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 · 답변서】

(질의서)

○朴仁相 위원

(노동부)

실직여성가장직업훈련수당 증액 필요

[예산안]

○ 고용평등사업-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항

사 업	2003예산 (A)	2004예산안 (B)	증 감	비 율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백만원) - 2,200명	2,740	2,476	△264	△9.6

[문제점]

○ 기타 실업자 훈련사업과의 비교

구 분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업자 재취직 훈련	고용촉진 훈련
전수강생	교통비	5만원	5만원	5만원
	식 비	5만원	5만원	5만원
해당자	가계보조금	15만원(재산세3만원 이하)		
	가족수당	5만원×3인 한도 최고 15만원		
	보육수당			
	능력개발수당			
	우선직종훈련수당		20만원	20만원
지급액		10~40만원	10~30만원	10~30만원

○ 지원조건

- 여성가장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에 직종별 표준 훈련비 단가에 따라 훈련시간, 훈련인원에 비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훈련생에게는 재산세,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월 5만~40만 원의 훈련수당 지원

○ 훈련중 생계안정 필요

- 여성가장 실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나 저 학력·무기능으로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여성가장은 가사·육아부담 등으로

직업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훈련비를 전액 지원함과 동시에 생계안정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 가계지원비 및 수당 수혜조건 까다로움

- 식비 5만 원(1일 5시간 이상, 1월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시), 부양가족 수당 15만원(재산세 3만 원 이하인 여성가장에 한함), 가계보조금 15만 원(재산세 3만 원 이하이며 본인 외의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에 한함)

[검토결과]

- 훈련수당 신설(20만 원)

[검토결과]

- 직원인건비 등은 타 공단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될 우려가 있어 증액은 타당치 않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사업비 110억 원 증액

[질 의]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출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내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 원입니다. 2002년까지 10억 원이던 것이 올해 20억 원으로 늘었고, 다시 100% 증가했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처에서도 장애인기금의 고갈문제를 어느 정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제는 과연 이 정도의 전출금으로 기금고갈이 해소되겠느냐는 것입니다.
- 지난해 말 기금 적립액은 1273억 원이고 올해 말은 890억 원 정도입니다. 2004년 말에는 503억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상태대로라면 2005년에는 기금이 고갈됩니다.
-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달리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 대책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의 무고용사업장을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김성조 위원과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처럼 국가기관에도 부담금을 물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두 법 개정이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 결국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제외하고는 현재 장담할 수 있는 기금 안정대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회계 지원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노동부가 예산처에 요구했다 삭감된 금액 가운데 적어도 직업능력개발사업비 110억 원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 만약 증액이 어려울 경우, 본 위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장애인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위한 부대결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재예방사업비 전출금 증액 필요

[예산안]

- 산재예방 - 산재예방전출금항

사 업 명	2003 예산 (A)	2004 예산안 (B)	증감 (B-A)	비율
산재보상 및 예방기금전출금	8,670	8,450	△220	△2.5

[문제점]

-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내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97년부터 출연을 한 이래 정부출연 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연규모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재예방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기도 함. 현재와 같이 사업주들의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산재예방사업 전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97	'98	'99	'00	'01	'02	'03	'04(안)
출 연 금	8,048	7,548	6,548	6,548	6,548	6,926	8,670	8,450
기금지출총액 대비출연율	0.43	0.40	0.32	0.39	0.32	0.28	0.32	0.27

[검토결과]

- 50억 5000만 원 증액
 - 증액시 노동부 당초 요구안 135억 충족(증액시 비율 : 0.4%)
- 정책제안사항
 - 산재예방사업비 출연금 3%까지 확대를 위한 중기계획 마련 필요

[질 의]

- 산재예방사업 전출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84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액수입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은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총액의 3% 이내의 금액을 정부가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산재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일정한 책임을 떠맡고 있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지난 '97년부터 정부출연이 시작되었는데 이 때 출연금 비율은 지출총액의 0.43%에 불과 했습니다.

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대신 오히려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예산에는 0.32%이던 것이 내년 예산에는 0.27%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산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산재근로자의 고통과 사업주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산재예방기금의 출연금 규모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당초 0.4%로 135억 원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산재예방 전출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동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출금이 증액될 경우 클린3D사업과 같이 예산소진으로 조기에 사업이 종결되어 왔던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 해외취업촉진사업예산감액 관련

○아울러 중고원의 예산과 해외취업예산은 서로 그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항목 즉 1611-220-303-01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각의 사업실적이나 상황에 따라 예산이 임의로 옮겨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 증액 필요

[기금집행계획 현황]

○임금채권보장기금 - 체당금 항

세부 사업명	2003 계획		2004 계획안	
	당 초	수 정	요 구	조정(A)
체당금 지급	77,779	99,863 (136,297) ^주	110,203	109,897

주 : 998억 6300만 원은 자체변경 기준, 1362억 9700만 원은 국회의결 추진 중인 2차변경안

[문제점]

○내년 체당금 지급액 부족 예상
- '03년도 체당금 지급예상액에 '04년 임금인상전망률(7.8%)과 제도개선에 따른 인상분(36.2%)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03년도 전망치(748억 5000만 원)^주 × 1.078 × 1.362 = 1098억 9700만 원

※ 주 : '03년도 전망치 : '03년 4월까지 지급액 × 12/4 = 249억 5000만 원 × 12/4

- 추가반영 필요성 및 규모

○올해 하반기 체당금 급증 추세에 비추어볼 때 올해 1~4월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한 내년도 체당금 지급 예상액 상향조정 필요합니다.

※ 10월초 221억을 자체 증액하였으나 연말까지 소요 총당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364억 원 추가증액을 위한 '03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국회 의결 추진 중 (10.27 국회 제출)

○'03년 7~9월 체당금 지급액을 기초로 산출한 '04년도 소요액은 1526억 원인 바 427억 원 추가반영 필요합니다.

※ '03년 7~9월 체당금 지급액/3 × 12 × 1.078 ('04년 임금인상률전망치) = 353억 9200만 원/3 × 12 × 1.078 = 1526억 1000만 원 - 1098억 9700만 원 = 427억 1300만 원

※ 체당금 증액에 따라 변제금(505억 3700만 원 → 761억 5500만 원) 및 여유자금(3481억 2000만 원 → 2643억 8500만 원) 등도 조정 필요

[검토결과]

○427억 1300만 원 증액 필요

[질 의]

○임금채권보장기금 중 체당금 예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체당금)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8년 7월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 9월 말까지 총 9만 3000명의 근로자에게 3116억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매년 체당금 지급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등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 등에서 근로자들의 수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고 노동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올해 6월 2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월간 해당급 지급실적은 35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제도개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경기침체 요인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되어 있는 해당급 예산 1100억 원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추계된 것으로 제도변경 이후인 7월부터 9월까지의 지급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산출하면 427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경제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해당급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427억 원을 증액하여 1526억 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吳慶勳 위원 (노동부)

□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 관련

정부는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훈련규모를 당초 6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은 금년 428억 7800만 원보다 33.6%가 증가된 57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훈련대상으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인문계고등학교 3년 재학중인 자 중), 제조, 건설업종의 기계조립, 용접, 전기공사 등 107개 직종 훈련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들 훈련대상 직종은 기피직종으로 훈련생 모집에 애로가 많을 것임.

특히 훈련비, 식대, 기숙사비의 단가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민간훈련기관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물가 인상률은 3.2%, 2002년 3.7%, 2003년에는 4.0%로 예상되는 등 3년 동안 상승률이 10.9%나 되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도 각각 7.9%, 7.8%, 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훈련비, 기숙사비, 식대의 단가 동결로 훈련생이 훈련기간동안 최소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정부지원금은 식대 1일 2500원, 기숙사비 1일 7000원, 교통비 월 5만 원 훈련수당 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민간훈련기관에 3년 동안 동결된 훈련비를 지원하면서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요구하고, 더욱이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 양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훈련비 현실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곧 기업에게는 인력공급 원활, 정부에게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근로복지공단)

공공보육시설설치지원사업에 2003년도 예산은 153억 1900만 원이었으나 2004년도 예산액은 7억 6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04년도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03년 신규 건립 3개소의 부대설비 및 유구비품 구입비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사업의 목적은 사업장 내 직장보육시설의 직접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규모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육아부담 해소와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사업장 내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규모사업장에 모두 설치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 2003년도 7월 말 현재 집행·성과내역을 보면, 153억 1900만 원 중 집행실적이 11억 87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달성률은 7.7%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003년도 사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잠정 중단한 것인가?)

이같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노동부는 5개소의 시설 건립부지 선정과 매입과정에서 4개소가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부지 매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보상비 낮기 때문이라면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계획을 세우는 등 소요예산 추계를 한 것인가?)

→ 노동부는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육아부담 해소와 취업활동 보장 등 고용안전에 기여하는지 의문시 된다고 밝혔는데 사업 계획수립이나 추진 시 사업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는 있는가? 있다면 그 결과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이 사업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전환비와 유구비

품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적극 유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02년도 결산결과 달성률이 0%로 집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 최종계획 대비 실적이 전혀 없는 사유가 무엇인가?(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기피라고 밝힘)

→ 노동부는 '02년도 사업실적이 전무하자 노동부는 신규설치에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시설 소요년수 경과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7월 말 현재 집행·성과내역을 보면 그 달성률은 7.7%에 불과(최초계획 26억 7500만 원에 실적은 2억 600만 원)합니다.

그 이유로 노동부는 지난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직장보육 시설설치 운영기피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소요예산을 추계한 것 아닌가?

□ 출산휴가급여

이 사업의 목적은 출산휴가 비용의 사회분담화 실현을 위해 일반재정과 사회보험을 통하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아울러 여성 고용구조의 개선으로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부담축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 '02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당초 1232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적은 226억 100만 원으로 그 달성률이 18.3%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런데도 2003년에 500억 원을 편성했고 그 실적은 전체의 3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노사의 인식부족, 생산차질과 업무마비를 우려한 사업주의 90일 휴가 기피, 동료 근로자의 업무가중에 따른 심리적 부담, 대체인력 지원 방안 미흡, 휴가사용으로 인한 소득저하 및 복귀 후 불이익 처우 우려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이러한 것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는지?

→ 이 제도 도입과 시행에 따른 이용 실태 등에 대

해 체계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적정방안을 마련,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실태에 대해서 지속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 하는지?

○全在姬 위원 (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 대구지역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대구지역의 근로자 대다수는 중소기업 종사자(65만 명)로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열악하여 여가선용, 교육 등 노동력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 지역 내 근로자단체 및 경영자단체 등도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동안 적정 규모의 복지관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이에 지난 '97년 12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성서공단 3차단지 내에 부지 2000평을 20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2002년 3월 연건평 2500평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 200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37억 원(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인 68억 50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 정부가 2003년 7월 추경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금 26억 원을 우선 지원키로 확정함에 따라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2003년도 국고 보조금 26억 원 이외 향후 국비 추가지원은 곤란함으로 대구시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지하철 화재참사 후 사후복구 등 당면 현안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따른 시의 과중한 부채(2조 8000억 원)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할 경우 수영장, 헬스장 등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종합복지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건립된 부산 근로자종합복지관(121억 원), 울산 근로자종합복지관(160억 원) 건립비와 비교할 때도 사업규모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대구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사회화합 및 노사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2004년도 국고보조금 27억 원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勳 위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동 사업 예산은 올해 7월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동부의 예산요구액 299억 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73억 원으로 삭감되어 특정지역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현재 실시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타당성, 장단점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실시에 대한 노동부의 평가결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 300% 이상 증가한 242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 이런 예산 편성은 시범실시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범실시라 함은 동 사업을 우선 일부 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평가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 그런데 아무런 평가결과 없이 올해 책정된 추경 예산보다 300%이상 증가한 242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군다나 사회적일자리의 성격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으며 취약계층의 실업 및 빈곤 해소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회의감이 많고 사회적일자리가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이상 추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불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 이후에 본격적인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 사업은 그 특성상 복지 차원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될수록

수혜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범 실시 후 아무런 평가결과 없이 사업예산을 대폭 늘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 내년 예산은 올 추경의 2배인 140억 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삭감하되 시범실시 결과가 나온 이후 평가에서 타당성과 당위성 효율성 등이 확보되면 내년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거나 내후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전·신축 관련

-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 정서함양과 근로의식 고취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건립되어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89년 대전역 인근에 건립한 충청남도 노동회관의 경우, 건물이 심하게 노후 되었음은 물론 대전광역시와 분리되면서 '99년 노동단체가 천안으로 이전하는 등 도내 근로자들의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근로자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 건물은 대전역세권개발계획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2005년도에는 철거될 예정입니다.
- 이에 현재의 노후 된 노동회관을 도내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천안지역은 최근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기업체 입주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내 근로자의 35%가 밀집되어 있어 노동회관 설립 후보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2005년도 철거 예정인 현재의 노동회관을 천안지역으로 이전·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근로자복지회관 이전·신축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17억 원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내실화와 관련

- 도입 배경
○ 종전에는 저소득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용자를 받기 위하여는 금

용기관에 담보·보증 제공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저소득근로자는 보증·담보 제공이 어려워 대부대상자로 결정되었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생계곤란을 호소하였습니다.

※ 2000년 말 기준 대부결정자 중 실업자 31.0%, 재직근로자 50.1%가 담보·보증 제공이 어려워 대부를 받지 못함.

○이에 근로자 보증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복지 기본법’이 2001. 8. 14 제정되었고 동법에 의거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이 2002. 1. 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사업 개요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등 대부사업을 대상으로 대부대상 근로자 중 신용보증 희망자에게

대부사업별 대부한도액 내에서 1인당 1000만 원 이내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대부사업 : 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용자사업

- 지방노동관서 :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근로복지공단 :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대학학자금, 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02년도 사업종료)

▷ 보증대상자 : 대부대상 근로자 중 신용보증 희망자
- 신용불량자 및 보증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인자는 제외

- '03. 1. 1부터 은행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부제한

▷ 보증한도 : 용자사업별 대부한도액 내에서, 1인당 1000만 원 이내

- 보증채무는 공단 85%. 금융기간이 15%를 각각 분담

▷ 보증료 징수 : 근로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2~0.5%를 징수(법상 연율 1.0%)

구 분	용자사업명	보증료율(연)	상환기간	보증료(5백만원)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4%	4년	51,940
	체불근로자 생계비	0.4%	4년	51,940
	대학학자금	0.2%	4~6년	33,420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0.2	10년	68,560
	대학학자금	0.2	6~9년	64,280
실직근로자	가계안정자금	0.5%	4년	74,800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0.4%	5년	50,980
	자동차 구입자금	0.4	5년	50,980

▷ 대위변제지급 청구사유 및 지급범위, 구상권 행사

- 청구사유 : 원리금 6월 이상 또는 기한이익 상실 후 3월 경과

※ 사망, 실종, 행불명 및 파산 등은 즉시 청구(청구기간1년)

- 지급범위 : 미회수 원금 및 미회수 원금 약정이자율에 보증비율(85%)을 곱한 금액, 기타 소송비용 등

- 대위변제 지급 후 공단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근로복지공단)

- 조직 : 본부에는 복지이사 소관 임금고용 국내에 신용보증부, 지사는 복지부(팀)에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

- 인력 : 정규직 11명(본부 5, 지사 6) 및 계약직 41명(본부 3, 지사 38)

□ 사업실적 및 채권관리 현황

○신용보증지원

- '02년 사업시행 후 '03년 9월 말 현재 총 7만 4120명의 저소득근로자에게 2588억 73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

※ 대학학자금 대부 32.0%, 생활안정자금 22.8%, 임금체불 생계비 19.1% 기타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및 산재정착금 등으로 구성

-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는 2002. 12. 31자로 종료
 ※ 보증부대부 및 보증금액 현황('03년 9월)

구 분		보 증 부 대 부				보증금액 (A×85%)	보증잔액 (D×85%)
		발생(A)	중도상환 (B)	대위변제 (C:100%)	잔액 (D=A-B-C)		
합 계	금 액	258,873	17,994	6,298	234,581	220,044	199,393
	인 원	74,120	2,115	1,225	70,780	63,002	60,164

○ 연체율 및 대위변제 현황

- '03년 9월 말 현재 원리금 미납 연체액은 총 156억 6800만 원(4306명)으로 보증부대부 잔액 2345억 8100만 원의 6.7%(인원 6.1%)

- 금년 초 급상승하던 연체율은 5월(8.02%)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 2.5%(8월)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임(8월 신용카드 1개월 이상 연체율 11.3%)

※ 연체율 증감 추이

구 분	'03. 3	4	5	6	7	8	9
연체율(%)	5.97	6.56	8.02	7.38	7.22	7.10	6.68
연체액(백만원)	11,463	13,062	16,021	14,860	14,532	14,627	15,668
연체자(명)	2,661	2,795	4,670	2,831	3,898	3,983	4,306

○ 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

- '02년 사업시행 후 '03년 9월 말 현재 대위변제액은 총 56억 3800만 원(1225명)으로 보증부대부 금액에서 중도상환액을 제외한 2408억 7900만 원의 2.3%(인원 1.7%)

- '03년 발생 대위변제는 49억 2700만 원으로 사업예산 54억 1100만 원의 91.1%를 집행(잔여액 4억 8400만 원)
 ※ 이자미납,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03년 9월 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보증부 대부 잔액(A)	대위변제 (B:100%)	이자미납		보증사고		대위변제	
				금액(C)	%(C/A)	금액(D)	%(D/A)	금액(E)	%[E/(A+B)]
합 계	금 액	234,581	6,298	15,668	6.68	9,006	3.84	5,638	2.34
	인 원	70,780	1,225	4,306	6.08	1,839	2.60	1,225	1.70

○ 구상채권회수 및 보증사고자 채권보전조치

- '03년 9월 말 현재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회수액은 83건에 1억 200만 원(회수율 1.8%), 채권보존 조치는 272건에 12억 6800만 원(조치

비율 22.5%)
 - 보증사고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는 527건에 25억 9300만 원(조치 비율 28.8%)
 ※ 채권보전조치 금액 회수는 민사소송에 따

른 법적절차 진행이 불가피하여 일정기간 소요

※ 대위변제자에 대한 구상채권관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구상채권			행불여부				직업유무		재산상태			채권보전조치				
	발생	회수	잔액	연락 가능	연락 두절	사망	진행	재직	실직	유	무	진행	금융	채권	부동산	차량	보류
인 원	1,225	83	1,142	199	488	5	533	67	694	282	479	464	49	4	60	159	10
금 액	5,638	102	5,536	905	2,254	22	2,457	292	3,227	1,313	2,205	2,120	234	12	277	745	36

※ 보증사고통지자 채권보전조치 내역

(단위:명, 백만원)

구 분	보증사고 (A)	재산상태				채권보전조치				
		유지산 (B)	(B/A)	무재산	조사중	금융	채권	부동산	자동차	보류
인 원	1,839	601	32.7%	797	441	159	6	98	264	74
금 액	9,006	2,913	32.3%	3,895	2,198	736	30	479	1,348	315

주 : 행불여부 및 직업유무 현재 조사 중(채권보전조치는 대위변제 청구전으로 공단이 의뢰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의 재산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것임)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04년도 기금운용계획 내역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안) (B)	증감 (B-A)		주 요 내 역
				%	
총 계	1,575,785	452,868	△ 1,122,917	△ 71.3	
□ 중소복지계정	123,433	190,779	67,346	54.6	
□ 실업대책계정	1,444,861	249,729	△ 1,195,132	△ 82.7	
□ 신용보증계정	7,491	12,360	4,869	65.0	
정부출연금	4,037	4,000	△ 37	△ 0.9	○ 일반회계 출연금
보증료 수입	917	1,529	612	66.7	○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 수입 - 대부사업별 연율 0.2~0.5%
여유자금회수	1,537	-	△ 1,537	순감	
타계정전입금	1,000	6,831	5,831	583.1	○ 중소복지계정 전입금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A)	2004계획(안) (B)	증감 (B-A)		주요내역
				%	
총 계	1,575,785	452,868	△ 1,122,917	△ 71.3	
□ 중소복지계정	123,433	190,779	67,346	54.6	
□ 실업대책계정	1,444,861	249,729	△ 1,195,132	△ 82.7	
□ 신용보증계정	7,491	12,360	4,869	65.0	
사업운영비	2,080	2,446	366	17.6	○ 인건비(정규22, 비정규30) 1475 ○ 관리운영비 971
대위변제준비금	5,411	9,914	4,503	83.2	○ '04년 대위변제금 7,414 ○ 대위변제준비금조성 2,500

□ 질의사항

- 신용보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우선 대위변제준비금 예산추계가 부정확해서 기금 운용에 차질을 빚는 문제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 장관님, 금년도 9월 현재 대위변제금 지급액과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 ▷ 9월 현재 지급액이 49억 정도 되고, 예산(54억) 대비 집행률은 91.1%에 해당.

※ 2002~2003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추진실적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계획	
	계획(A)	집행(B)	%(B/A)	계획(C)	2003.9월 집행(D)	%(D/C)		
신용보증 지원	금액 (백만원)	144,100	151,974	105.5	145,100	109,075	75.2	152,100
	인원(명)	51,837	40,324	77.8	46,220	34,423	74.5	49,420
대위변제 지급	금액 (백만원)	2,300	38	1.7	5,411	4,927	91.1	9,914

- 올해 대위변제준비금 54억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 올해 예상 대위변제액이 125억 원 정도인데 예산은 54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요예산 부족액은 71억 원 가량 됩니다.
- '04년도 소요예산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습니까?
- ▷ 내년에도 대위변제준비금 99억 원보다 대위변제액이 다소 많이 나갈 것으로 보는데 대략 7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래서 소요예산 추계가 왜 이렇게 부정확한 것인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03년 및 '04년도 대위변제준비금을 책정할 때 활용된 연체율이 지난 '01년 4월의 연체율(1.3~22.3%, 은행상각률 포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입

- 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하락의 여파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위변제액이 당초 예산을 뛰어넘은 것이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 게다가 '02~'03년 신용보증 지원 연체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03년 9월 말 현재 연체액 157억 원 중 '02년 보증채무 연체액이 전체의 87.9%(138억 원)에 해당하는데 그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44억 원에 달하고 그 중 45.5%인 20억 원이 '0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여타 신용보증 지원대상 대부사업(대부대상이 대부분 재직근로자)에 비해 보증사고나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부사업을 지원하면서도 사업

예산 편성(대위변제준비금 책정)시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 지적하신 바대로 '03년도 예산 대위변제액 125억 원의 42.1%인 53억 원 가량이 '02년에 사업이 종료된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 대부사업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06년 이전에는 대위변제액에 다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물론 노동부나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보증 지원사업이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축적하기에 사업시행기간이 너무 짧은 하지만, 이처럼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조차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럼, 올해 소요예산 부족액 71억 원과 '04년도 소요예산 부족액 7억 원을 합한 78억 원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계획입니까?

▷ '03년도 부족액 71억 원은 국회심의 일정상 기금운용계획의 추가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04년으로 이월 조치하고, 그로 인해 '04년 대위변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은 대위변제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협의 하에 대위변제 청구를 다소 늦추겠다는 뜻임

○ 그렇다면 내년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고, 정부가 내년에 별도로 추경 편성을 통해 대위변제 부족액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기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내의 중소기업계정에 여유자금(약 715억 원)이 다소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소요액('03년·'04년도 부족액) 78억 원을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추가 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물론 근로자복지기본법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인 신용보증 지원사업이 복권판매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고, 신용보증 사업비를 기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중소기업계정(로또, 인터넷, 즉석식 복권 판매수익이 주

수입원)으로부터 매년 재원을 조달하고 또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법적 근거는 신용보증 지원사업이 예산사업(별도의 기금설치 없이 정부 출연을 전제로 함)으로 추진됨에 따른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정부가 근로자 복지에 대한 책임(재정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2조제3항: 신용보증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 안에서 구분하는 자금간에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02~'03년도 신용보증사업 수입예산 재원 조성

(단위: 백만원)

구 분	'02년 예산	'03년 예산	'04년 예산	비 고
계	2,937	7,491	12,360	
일반회계출연	2,663	4,037	4,000	
보증료 수입	274	917	1,529	
전년도 이월금		1,537	-	
타계정 전입금		1,000	6,831	중소복지계정

- 대위변제 지출예산: '02년 23억 원, '03년 54억 1100만 원, '04년 99억 1400만 원

○ '04년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운용계획서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정부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중소기업계정의 경우 올해까지만 해도 정부출연금, 재특차입금, 자체수입금, 여유자금회수금 등으로 짜여졌던 수입원이 '04년도부터는 로또복권 등 복권수익의 증가로 정부출연금, 재특차입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복권수입만으로 근로자 복지사업을 해야 할 판입니다.

○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신용보증계정의 경우에도 정부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중소기업계정에서의 전입금은 전년에 비해 무려 583%('03년 10억 원→'04년 68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신용보증 지원사업도 복권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대위변제 추가소요액 78억 원도 중소기업계정에서 충당한다면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근로자 복지 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

- 심판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장관님, 본디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 시에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타 신보사와 같이 기금조성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정부의 기금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금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소요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복권수입(중소복지계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차라리 대위변제금의 증장기 소요를 감안하여 신용보증사업계정에 준비금 항목을 설치하여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거나 아예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대로 최근에 연체가 늘고 대위변제 지급액이 급증한 원인이 전체적으로 경기 불황의 탓이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결과라는 데 그다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 사업의 지원 요건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습니다. 즉, 동 사업의 보증대상이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로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기준(은행 여신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동 사업의 취지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그러나 상환의지가 불투명한 근로자인 줄 뻔히 알고서도 신용보증지원을 남발하는 것 또한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컨대 '02년 대위변제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된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실직자에게 신용보증 지원과 함께 연 8.5%의 높은 이율로 500만 원 가량의 자금을 대부해 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근이 되어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는 일이 없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장관께서는 연체 및 구상권 행사에 너무 집착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적정 연체율이나 목표 구상권 회수 비율을 설정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정수급 및 대위변제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보증 및 담보 제공이 어려워 정책자금 대부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재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의 수행 인원으로 볼 때 늘어나는 연체자와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다지 용이해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구상채권 회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근로복지공단)
 - 조직 : 본부에는 복지이사 소관 임금고용 국내에 신용보증부, 지사는 복지부(팀)에서 신용 보증업무를 수행
 - 인력 : 정규직 11명(본부 5, 지사 6) 및 계약직 41명(본부 3, 지사 38)
-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대책이 마련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부대상 및 한도	대부조건	대부결정기관
실직 근로자	가계 안정 자금 ○대상 : 구직등록 후 1월이상(생계 6월) 경과 세대주(주소득 원인 자 포함)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거주자 ○용도 : 생계비 ○한도 : 500만 원	○이율: 연 8.5% ○상환: 2년거치 2년분할	근로복지공단 (’02년사업종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용보증 지원대상 대부사업
-노동부의 근로자 대상 정책자금 용자사업(8종류)-

구 분		대부대상 및 한도	대 부 조 건	대부결정기관
제직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상 : 월 평균급여 170만 원 이하인자 ○용도 : 의료비, 혼·장례비 ○한도 : 500만 원(중복대부시 1000만 원)	○이율 : 연5.75% ○상환 : 1년거치 3년분할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생계비	○대상 :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자 ○용도 : 생계비 ○한도 : 체불임금범위 내에서 500만 원	○이율 : 연5.75% ○상환 : 1년거치3년분할	근로복지공단
	대학 학자금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전문대 이상 ○용도 : 학자금 ○한도 : 학자금 범위내	○이율 : 연1% ○상환 : 2년거치 2~4년 분할	지방노동관서
산재 근로자	생활 정착금	○대상 : 유족,장해1~9급, 상병연금 수급자 ○용도 : 사업자금, 주택자금, 생업자금 ○한도 : 담보대부(사업·주택 3000만 원, 생업자금 1000만 원), 신용대부(생업자금 500만 원)	○이율 : 연3% ○상환 : 5년거치 5년분할	근로복지공단
	대학 학자금	○대상 : 생활정착금과 동일(자녀 포함) ○용도 : 학자금 ○한도 : 학자금범위내	○이율 : 거치1%상환 5% ○상환 : 졸업 1년후 4년분할	근로복지공단
실직 근로자	가계안정 자금	○대상 : 구직등록 후 1월 이상(생계 6월) 경과세대주 (주소득원인 자 포함)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거주자 ○용도 : 생계비 ○한도 : 500만 원	○이율 : 연8.5% ○상환 : 2년거치 2년분할	근로복지공단 (’02년사업종료)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 안정자금	○대상 : 동일사업장에 2년(중증장애인 1년)이상 근속 하고 있는 장애인 ○용도 : 생계비 ○한도 : 1000만 원	○이율 : 연 3% ○상환 : 5년분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동차 구입자금	○대상 : 장애인근로자 ○용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한도 : 1000만 원(휠체어 리프트등 설치시 500만 원 추가)	○이율 : 연3% ○상환 : 5년분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아울러 장려금 수급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행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상에는 채용전 3개월과 채용후 6개월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다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운용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감원방지기간’을 일정 정도 연장하여 순고용효과를 높이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의 기간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만약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안정성 또는 순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원방지기간의 연장과 같은 방안들이 우선 조치된다면 동 장려금의 활성화 방안, 즉 지원기간의 확대와 장려금 추가지원을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두 가지 사항이 모두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동시 추진이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서는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현재 고용조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용중인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지원요건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유사함에도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체에 두 장려금을 통합하여 재설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고용장려금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비교

- 재고용장려금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실업기간 6개월 후 2년 이내에 자사에서 재고용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은 220만 원(대기업180만 원)이 지원됨.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에 의해 타사에서 채용시 지원하며, 채용 후 6개월간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여 총 지원금액이 360만 원이 되었습니다.

○ 검토결과와 대책이 마련되면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德圭 위원
(노동부)

□ 고용보험기금사업 중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관련 질의

동 사업은 2003년 8월 29일 주 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도부터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00인 이하 제조업 또는 300인 이하 광업·건설업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순수하게 고용이 창출된 인원) 대하여 1인당 분기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5293명분에 대하여 917억 5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662억 38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나,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 집행되었습니다.

○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인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2003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9월 말 현재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예산 불용이 예상되어 고용안정·능력개발·실업급여의 반환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전용하게 된 이유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액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5일근무제가 노사정 간 합의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노동부의 현실인식과 상황판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 당초 법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무리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2003년의 기금운용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본 위원은 이 사업비가 중소기업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항목이라는 것에 십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

지 기다렸다가 필요하다면 국회에 요청을 해서 기금 중 일부를 이 사업비로 쓰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노동부가 법안 통과 이후에 이 사업 항목을 요청했다면, 충분히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10월 말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러한 기금운용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5일근무제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신규 근로자의 고용창출을 지원하여 주5일근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 근로자 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의 적절한 지원규모와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500인 이하 제조업 또는 300인 이하 광업·건설업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순수하게 고용이 창출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분기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 예산에 1만 5293명분에 대하여 917억 5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음.

노사협력사업 중 ‘한국노동교육원 출연’

○2004년도 한국노동교육원의 정부출연금 75억 6600만 원은 전년도보다 2억 1800만 원(3.0%)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중 건설사업비 예산액 10억 원은 강의동 3층 증축공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의 경우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3년 연속 계상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증축 예산이 편성만 되고 전액 집행되지 못한 항목을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한번 통과된 예산항목은 집행성과나 실적도 없어도 반복해서 편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관련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의 집행이 사전분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심각하게는 원래의 사업목적에 아닌 부분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노동교육원 업무 중에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지요?

(공무원 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노동관련 공무원교육, 고용안정센터직원 직무교육, 지자체 노정담당공무원교육, 기타 타부처 공무원관련 교육 등을 담당함)

○그동안 지자체 취업 알선이나 고용촉진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서 상임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특히 올해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렸습디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고용안정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방안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의임.)

○朴赫圭 위원
(노동부)

노동부 2004년 예산안 질의

□ 직업훈련 수당 현실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2004예산 (안)	추가반영 필요액
직업훈련수당	취업유망분야훈련 (13천명→15천명) ※ 일반회계	39,000	45,000	1,800
	실직자 재취업훈련 (6만명)	105,000	115,500	6,600
	정부위탁훈련(1만명) ※ 고용보험기금	75,332		2,400

직업훈련 수당 현실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은 훈련대상 및 훈련종류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분 집행되고 있는데 그 중 직업훈련 수당이 200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5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수당 부분 실비항목인 식비·기숙사비의 경우 현실성이 없어 현장에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감안해서 식비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기숙사비는 17만 5000원에서 2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훈련인원 20% 감안 전체적으로 볼 때 1만 원 인상요인).

훈련수당으로 18억 원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만 5000명×2만 원×6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실업자 취업훈련 수당 인상시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정부위탁훈련대상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업자 재취업훈련에 66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정부위탁훈련에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총 108억 원의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실업자재취업 훈련 : 6만 명×2만 원×5.5월 = 66억 원

- 정부위탁훈련 : 1만 명×2만 원×12월 = 24억 원)

□ 모성보호 지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03예산	2004예산(안)	추가반영필요액
모성보호 지원	0	2,000	19,875

모성보호 지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모성보호비용지원은 산전 후 휴가급여 비용의 사회 분담화를 통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피요인을 완화하여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전후휴가 90일 중 30일분에 대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5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고용보험기금 진출금의 20분의 1인 20억 원만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모성보호는 국가인적자원의 생산과 양육을 위한 투자로서 국가 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할 사회공동의 문제이므로 일반재정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시('01. 8월)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산전후휴가 급여는 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하되,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한 국회의 부대결의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2004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는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금이 437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2분의 1인 218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사회적일자리창출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2004예산(안)	비 고
사회적일자리창출	7,260	24,204	△16,944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299억 원→73억 원, 8300명→2000명)되어 특정지역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0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아직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

고 후에 이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업 및 빈곤 해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적일자리가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이상 추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 불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적일자리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까지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는 봉사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의 봉사활동을 유급화함에 따라 기존의 봉사활동의 의미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2003년도 추경에 시범사업 위주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2004년도의 예산반영 시에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2004년 예산을 2003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 기능대학 장비보강 문제

기능대학 장비보강문제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전통제조업이나 민간이 양성하기 어려운 국가 기간 산업 분야, 시설, 장비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의 인력양성인데 기능대학의 학과 70%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및 신기술 장비는 산업체 기술발전 추이를 감안하여 적시에 확보해야 양질의 현장적응력이 높은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장비는 2003년 8월 말 현재 노동부에서 고시한 장비기준(노동부 고시 제1996-39호 : '96. 10. 26)대비 76.2%가 확보되어 있으며 노후교체 대상장비는 1만 2691점으로 보유장비의 38.2%를 나타내고 있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보유	부족	보유율 (%)	노후	노후율 (%)	비고
대학							
계	43,566	33,196	10,370	76.2	12,691	38.2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능대학의 부족장비 확

보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매년 5~12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기능대학에서는 부족장비 확보의 일환으로 장비를 무상기증 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워크스테이션 등 일부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리스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발전 추이 및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산업인력을 바로 양성,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노후 및 신기술장비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결산	2003예산 (A)	2004예산(안)		증감 (B-A)	
			요구	검토(B)		%
장비보강	1,200	1,235	1,852	1,482	247	20.2

□ 성남기능대학 건축설계비 반영문제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결산	2003예산 (A)	2004예산(안)		증감 (B-A)	
			요구	검토(B)		%
성남기능대 건축설계비	-	-	577			

성남기능대학 개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대학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부응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해 기능대학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정수기능대 등 4개 기능대가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노후시설을 개축하여 교육환경을 현대화함으로써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서울정수기능대 이외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성남기능대의 경우 건물이 지난 76년도에 건립되어 27년이나 지나 시설의 노후화가 극심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학생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일대가 고도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올 8월에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이 가능해 지면서 건물 개축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2004년 예산에 설계비 5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건물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기금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500인 이하 제조업 또는 300인 이하 광업·건설업 사업주가 근로 기준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인당 분기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5293명분에 대하여 91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66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나 주 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당초 법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무리하게 반영한 결과로 시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규모 및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보이며 단지 사업의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실근로시간단축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감	
		요구	조정		%
계	-	577	500	500	순증
컨설팅지원사업	-	2,500	-	-	-
교육홍보사업	-	500	500	500	순증

이렇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반영된 홍보사업 5억 원은 고용보험 기금 사업에 대한 홍보사업과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에 반영된 5억 원은 삭감하고 모두 고용보험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洪文鐘 위원

(노동부)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예산사업)

○현 황

-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이 낮아지고 있어 6월 이상의 장기구직자, 청년실업자, 여성, 고령자, 자활대상자(취업대상자)등 근로의욕 및 직업수행능력이 낮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황 : 9. 30 현재 : 표1>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안	
	목표	집행실적	요구	조정
예산액	7,260	37	58,678	24,204
지원인원	2,000	1,312	5,700	3,000

※ 2003 예산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7월 추경 이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대다수 이루어지지 않았음.

<추경이후 추진실적현황 : 9.30 현재 : 표2>

구 분	배정인원	계 (집행율)	노동	안전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교육	환경	기타
계	2,000	1,312 (65.6)	166	8	732	76	160	140	30
서울	698	397 (56.9)	42	-	270	6	28	34	17
부산·경남	383	144 (37.6)	21	4	83	20	6	5	5
경기·인천	585	418 (71.5)	71	-	158	45	75	63	6
전북	130	159 (122.3)	5	4	102	5	10	31	2
대전·충남	204	194 (95.1)	27	-	119	-	41	7	-

<사업 세부 내용 : 표3>

분야	사업 내용	단체 및 지역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육 및 노동상담 ·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노동상담 · 고용평등 진화 운영 · 산재근로자 간병사업 등 	푸른시미니연대, 서울북부 부산청년문화센터, 부산청 여성정책연구소, 부산동래 거제YMCA, 통영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불편 신고센터 ·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자 육성 및 교육장운영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부산동래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군산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및 노인가정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무료 빨래방사업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 및 어린이 도서관 운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피학대 아동보호 그룹홈 아동보육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등 	강남 시니어클럽, 서울강남 강동 종합사회복지관, 서울동부 파랑새 어린이문고지킴이, 서울북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동래 어린이보호재단 인천지부, 경인청 지역복지센터 나눔과함께, 인천북부 금산사복지원, 전주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랑인 간병인 사업 · 어린이 안전문화 조성 장난감 병원사업 등 	마리아수녀회 은평의마을, 서울서부 희망본부, 전주
문화, 관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기행 지도 · 청소년시설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이동 청소년 수련광장 · 한국근현대사료 조사 · 청소년 건전 경제 생활 교육 및 캠페인 · 학교도서관 지원·양성 사업 · 청소년 5일 금연학교 운영 · 저소득층 아동 도서관 운영 · 지역문화 홍보단 등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동부 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서울남부 민족정기교육연구회, 서울북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청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창원 우리누리청소년회, 수원 광명YMCA, 안양 군산YWCA, 군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교를 개보수하여 물 체험학교 설치 운영 · 연안 환경 모니터링 및 자료 구축 · 폐컴퓨터 수거 및 무상기증 사업 · 공중화장실 청소 등 · 유기농산물 재배 어린이집 등에 무료제공 	무지개세상, 서울동부 부산녹색연합, 부산청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청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경인청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인천북부

<성별·장기실업자·장애인 참여 현황 : 표4>

(단위 : 명, %)

참여자수	성 별		장기실업자 비중		장애인 비중	
	남	여	장기실업자	비장기실업자	장애인	비장애인
1,312	238(18.1)	1,074(81.9)	747(56.9)	565(43.1)	72(5.5)	1,240(94.5)

<취약계층·연령별 현황 : 표 5>

(단위 : 명)

총 계	취 약 계 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일 반 구 직 자		
	소계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자	소계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자	소계	청년층	중장년층
1,312	935	186	579	170	32	4	25	3	345	120	225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여섯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첫 번째, 법적 지원 근거가 너무 포괄적임. 관련법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 제17조(여성), 제18조(청소년) 및 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이지만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자의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3년 1월 인수위 보고 이후 단기간 내에 수립된 정책이어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 수요예측, 향후 전망(업무의 연속성), 적정 소요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필요성에 의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선 사업수립 후 명목상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국제 포럼 형식의 모임에서 간단하게 언급되었던 사항입니다.

- 두 번째,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실업자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관련 통계 자체가 정확성이 없습니다.(현재 노동부에서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음)

직업훈련·공공근로 참여, 실업급여 수급, 실업자 대부 신청 등만을 위해 구직신청한 자 등 취업의사가 없는 실업자가 다수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취업자라 할지라도 본인·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대부분 통보하지 않거나 유효구직신청건이 없는 장기구직자 중 취업자에 대한 삭제가 곤란합니다.

유효구직 신청건이 없는 장기구직자 중 취업자 및 취업의사가 없는 자를 삭제할 경우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향후 각종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 확인이 어려워 민원발생소지가 큼니다.

정확한 장기실업자 통계 자료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비체계적인 사업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 세 번째, 현재 장기실직자, 여성, 고령자, 자활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고령자취업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자활취업촉진,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현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

업들과 중복되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들조차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익성이 있는 일자리’라는 명목 하에 똑같은 대상자들에게 같은 성격의 사업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네 번째, 표4와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1312명 가운데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가 81.9% (1074명)로 월등히 많으며, 장기실업자가 56.9% (747명), 중장년층이 63.1%(829명 :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일반구직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기 자료를 추측해 보면 중장년층의 여성 장기 실업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참가자 현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다섯 번째, 사회적일자리창출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직접 채용 혹은 취업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지원대상인원 1인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해 이들 단체가 취업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형식입니다.(A라는 비영리 단체가 10명의 지원대상자를 채용하거나 취업지원을 해 주었다면 월 600만 원을 지급해 이 단체가 취업자들에게 지급해 줌.)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둘째, 이들 비영리단체가 이익집단으로 변질화되어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6개월 동안 취업을 한 취업자에 대해 1회에 한해 6개월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지만 2년, 3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상의 무리가 뒤따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에 있어서도 사업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자료를 근거로 명확한 재지원이나 탈락절차가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시켜 나간 비영리단체와 그렇지 못한 비영리단체간의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비영리단체 간의 이권다툼이나 위상관리 차원의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28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내놓은 실업대책 등을 포함한 각종 정책이 백화점식 정책 수립과 운용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8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 수를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정책 운용을 통해 수혜자들이 효율성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사이버 노동상담센터(신규 예산사업)

○현 황

- 본 사업은 노동분야 민원을 단일전화번호 및 인터넷상으로 접수받아 집중 처리함으로써 지방노동관서의 잡무 부담 제거 및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 예산안	
	요 구	조 정
예산안	6,856	3,335

○질의 포인트

- 상기 사업이 지금부터라도 추진된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사업의 자세한 운영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지만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자원하는 신청자 가운데 사이버노동상담센터 운영인력을 80~90명 정도 뽑아가동할 계획이라고 함.(근로감독관 46명+고용안정센터별 직업상담원 1명씩 : 현재 근로감독관 증원 요구는 행자부와 협의중입니다. 만약 증원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가운데 46명을 뽑음)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One-Stop Service가 제공되어야 민원인과 지방노동관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사이버노동상담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진행과정 및 해결방법 도출이 상담센터에서 지방노동관서로 체계적으로 옮겨지지 않고 만약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연락처만을 민원인에게 전해 줄 경우 센터 운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은 현장에서 상담을 해 주고 다소 복잡한 상담 내용일지라도 상담센터·고용안정센터간 전산망을 구축해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는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그 이후 과정은 상담센터에서 지방노동관서나 고용안정센터의 해당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해당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해결방안을 연락해 주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사이버 노동상담센터 ⇔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안정센터 ⇔ 민원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만족스러운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과정별로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노동부가 계획 중인 근로감독관 46명+고용안정센터별 1명씩 뽑는 인력 운용 방안도 약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담센터 내에 근로감독관이 46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자부와의 협의가 안 될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을 뽑아야 하는데 가뜰이나 부족한 근로감독관의 수가 상담센터로 46명이나 옮긴다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5인 미만의 근로감독관 운영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 두 번째, 전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효율적 운용의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80~90명의 정해진 상담인력으로 전국의 많은 민원인들의 상담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형태별 상담, 일별·주별·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 상담실적 및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피드백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상담에 있어서 실시간 상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부가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세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민원인들의 불평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업무 경감을 통한 집중 강화의 목적은 거두지 못한 채 혼란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노동부는 시행착오기간을 거쳐 상기 사업을 본 궤도로 올려놓으면 그만이지만 민원인의 절박한 상황은 제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자활지원사업 관련(예산사업)
- 자활취업촉진·자활직업훈련·직업적응훈련 : 함께 질의

<자활취업촉진 집행 현황 ; 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결산	2003 예산		2004 예산안	
		목표	집행실적	요구	조정
예산액	2,340	3,454	1,105	4,022	2,955

<자활직업훈련 집행 현황 : 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결산	2003 예산		2004 예산안	
		목표	집행실적	요구	조정
예산액	16,297	7,665	3,640	7,800	6,132

<직업적응훈련 집행 현황 : 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결산	2003 예산		2004 예산안	
		목표	집행실적	요구	조정
예산액	6,000	3,337	1,373	5,321	2,035

- 자활취업촉진은 취업가능성이 높은 취업대상자 위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산업현장 견학, 구인업체 개척사업 등 취업대상 특성에 따른 자활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1일 2만 1000원, 교통비 2000원, 중식비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자활직업훈련 또한 취업대상자 위주로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대상자에게 훈련비(월 27만 원) 및 훈련수당 월 7~24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 직업적응훈련은 낮은 직업능력과 열악한 가구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활대상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르침으로써 자활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취업대상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전액과 자활수당 10만 원(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급), 교통비 2000원, 중식비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3개 사업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 수급자와 비조건 부수급자로 나누고,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이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근로 유인 조건이 너무 열악하였습니다.

이들 취업대상자가 주 5일씩 취업 혹은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득이 생길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가만히 있더라도 그리 큰 차이가 없는 소득이로 인해(생계급여의 수급자에게는 월 30~4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됨.)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수급자의 수가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이 취업이나 훈련을 꺼려해 인원 자체가 적다보니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 사업 모두 매년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3년 8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게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는 올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급여체계·프로그램 보완·전달체계 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더라도 2005년부터 반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까지는 현재의 비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올 12월에 나오게 될 연구용역 결과를 2004년 상반기에 있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며, 2004년은 2002년과 2003년 실적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사업(기금사업)

○현 황

- 실업자 재취직 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한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연간 4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첫 3개월동안 매월 60만 원씩, 이후 3개월동안 매월 40만 원씩,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매월 20만 원씩 지급)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결산	2003 예산		2004 예산안	
		목표	집행실적	요구	조정
예산액	-	15,000	18	15,586	5,611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40대 이상의 실직자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취지로 추진되었지만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않아 유명무실인 제도로 되었습니다.
- 첫 번째 문제로는 40대 이상의 실직자가 중소기업체로 지원을 해야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는데 3D업체의 특성, 사무직의 제조업으로의 업무 전환 등을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지원자 및 사업주조차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을 정도로 노동부의 사업주에 대한 홍보 활동이나 지원실적이 전무합니다.
- 세 번째, 직업훈련과 연계되어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간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네 번째, 40대 이상의 실직자를 보다 세밀하게 분류(40~50대, 50~60대, 60대이상)해서 각 세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중요한 40~50대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지원방식 또한 첫 3개월은 60만 원, 이후 3개월은 4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20만 원씩의 지원이 아닌 수혜인원은 조금 줄이고 지원 금액을 조금 늘리더라도 1년간 매달 45~50만 원씩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주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고민을 할 것입니다.
-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은 취지를 잘 살린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노동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사업(기금사업)

○현 황

- 여성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3개 사업으로 이루어 집니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사업 집행 현황 : 9.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실 적		
	인원	예산	인원(%)	예산(%)	
'01	육아휴직장려금	24,800	47,561	3,136(12.6%)	2,804(5.9%)
	여성재고용장려금	82	214	223(272%)	214(100%)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480	803	818(170%)	803(100%)
'02	육아휴직장려금	72,966	70,711	2,227(3.1%)	2,836(4.0%)
	여성재고용장려금	176	250	333(189%)	232(92.8%)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864	1,031	873(101%)	1,031(100%)
'03.9	육아휴직장려금	9,000	17,971	2,720(30.2%)	3,788(21.1%)
	여성재고용장려금	953	286	178(18.7%)	128(44.8%)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1,861	1,117	407(21.7%)	504(45.1%)
'04	육아유직장려금	7,000	13,776	-	-
	여성재고용장려금		314	-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1,228	-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실질적으로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용불안, 휴직으로 인한 동료 근무자의 업무 과다, 사업주의 암묵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장려금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과 2002년도에는 지원목표인원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그 원인이었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었으며 2003년도부터는 지원목표인원을 대폭 줄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육아휴직장려금 성격의 사업은 기존의 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 보다 예산을 사리되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노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 자연퇴직률 등을 감안해 육아휴직급여자수의 90%를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목표 인원을 삼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이번 2004년도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목표인원(7000명)을 육아휴직 급여자수 목표치(7000명)와 동일하게 잡은 것은 추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04년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목표인원을 7000명에서 6300명으로 줄이는 방안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목표인원을 7778명으로 늘리는 방안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경우 2001년과 2002년도에는 높은 집행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3/4분기가 지난 9월 30일 현재,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에 있어서는 더욱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노동부에서도 현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현상인지 시급히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사업(예산사업)

○현 황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사업 예산 현황 : 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결산	2003 예산		2004 예산안	
		목표	집행실적	요구	조정
예산액	334	350	310	410	200

<성희롱 관련 상담 현황 : 9.30 현재>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2. 9월	2003. 9월
계	1,044	1,340	1,845	1,359	1,219
지방관서	553	604	872	645	531
민간단체	491	736	973	714	688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 현황 : 9.30 현재>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2. 9월	2003. 9월
계	370	48	93	74	4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신고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이는 성희롱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경기불황 및 고용사정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관심이 고용안정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 이번 감액 가운데 TV광고 홍보비가 1억1235만 원 삭감되었으며 민간단체 및 기업노동담당자 교육이 6000만 원, 비디오 제작비 6000만 원, 만화 홍보비가 27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관련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성희롱 근절의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희롱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삭감조치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번 감액 조치는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노동부에서는 비디오 제작 같은 형식적 사업은 지양하더라도 타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책정에 있어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徐秉洙 위원 (노동부)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 사업에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과 구인업체 개척사업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는 해외취업 알선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및 구인업체 개척사업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과 구인업체 개척사업의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를 통해서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지적 사항이 내년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사업

-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 사업에 96억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24개 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지원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 사업의 타당성에는 동의 합니다.
- 다만 예산안 심사소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첫째, 고용안정센터에 청년 취업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전문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년 취업지원실이 설치되는 24개 고용안정센터별로 연계할 수 있는 외부기관 내역과 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둘째, 청년 취업지원실의 가장 큰 기능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부 직업훈련 중 취업 유망 분야에 대한 훈련사업을 청년 취업지원실이 어떻게 연계하고 알선할 계획인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셋째, 중장기적으로 15세 이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진학 청소년은 물론 중고등학교 담당 교사 등과의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해외취업알선사업

- 해외취업알선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 올해 9억 9400만 원의 예산과 비교할 때 974% 증액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취업알선사업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예산(A)	2004예산안(B)	증감(B-A)
계	994	10,679	9,685

일자리 발굴을 위한 해외 구인처 개척	66	778	712
적극적인 해외취업 알선업무 추진	478	661	183
해외취업 능력향상 연수과정 운영	450	6,000	5,550
해외인턴과정 운영	-	3,000	3,000
해외취업 정규직제 및 정원 반영	-	240	240

○ 청년실업자의 해외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해외취업알선사업 집행실적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 첫째, 해외취업알선 대상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취업 연수에 1500명과 해외 인턴과정에 500명 등 모두 2000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1998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해 해외취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한 인력이 모두 871명입니다.

<해외취업알선사업 연도별 취업 실적 (2003년 7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구직	구인	알 선		취 업		
			계획	실적	합격	근로 계약	축국
계	47,736	8,499	16,000	11,625	2,101	1,119	871
1998년	8,916	1,138	1,000	1,625	85	71	13
1999년	13,401	2,400	5,000	2,270	490	132	109
2000년	6,717	1,749	3,500	2,788	206	218	160
2001년	5,520	1,553	3,000	1,782	850	392	213
2002년	7,299	1,126	2,000	1,622	116	152	295
2003년	5,883	533	1,500	1,538	354	154	81

○ 그동안 30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불과 871명의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내년 한 해동안 106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2000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구상이 타당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 게다가 이 해외취업알선사업의 예산집행실적 또한 대단히 저조합니다.

<해외취업알선사업 연도별 예산집행실적
(2003년 7월 현재)>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이월률	이월률	불용률		
1999년	7,934	3,070	50.0	4,864	61.3	-	-
2000년	5,298	2,449	46.2	2,773	52.3	76	1.4
2001년	3,713	3,268	88.0	250	6.7	195	5.3
2002년	1,244	983	79.0	-	-	261	21.0
2003년	994	211	21.2				

-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만 하더라도 21%의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 아울러 전문위원도 지적하고 있지만 해외 인턴 과정에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국가 예산 30억 원이 청년층의 해외 어학연수에 투입되는 결과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해외 구인개척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7억 7800만 원과 적극적인 알선업무 추진에 소요될 예산 6억 6100만 원, 그리고 산업인력 공단의 전담 조직과 인력 보장을 위해 책정된 2억 4000만 원 등 모두 16억 7900만 원의 예산안에는 동의 합니다.
- 16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해외 취업 연수와 인턴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때문에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비 60억 원과 인턴과정 운영비 30억 원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 노동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하여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편성된 242억 원의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72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삭감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지원사업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2003년 예산(A)	2004년 예산안		증감액 (B-A)	%
	요구	조정(B)		
7,260	58,678	24,204	16,944	233.4

- 첫째,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 시행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 등을 편성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노동부가 사업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평가해 보았습니다.
- 우선 542개 단체 4480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노동부는 428개 단체와 2372명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9월 말까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65.6%인 1312명입니다.
-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실적도 3707만 1000원입니다. 당초 예산 726억 원의 0.5% 수준입니다.
- 당초에 예정한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 둘째,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노동부는 공익성이 높고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로 간병인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이번에 신청된 사회적일자리 중 간병인 지원 사업이 39건에 신청된 인원은 299명입니다.
- 하지만 간병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알던 2만 원을 지급하는 이 간병인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보건복지부가 투입할 내년 예산만 1624억 원입니다.
- 간병인 지원사업 중 어느 것이 사회적일자리이고 또한 어느 것이 자활근로사업인지 장관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고, 그리고 자활 근로사업의 대상인 환자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장관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에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 노동부는 아직까지도 이 사업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노동부 산하기관 이사장조차 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혼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말하자면 창출된 사회적일자리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존립 가능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예컨대 이번의 시범사업 중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사업이 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8개 단체에서 신청한 488개 사업 중 17.6%의 비중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 내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일자리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활동이 취약계층의 사회적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 사회적일자리 성격이 모호하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이 영역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습니다.

계상된 예산 242억 원도 72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 2004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이버노동상담센터운영, 중소기업 실근무시간 단축지원, 모성보호비용지원 등 모두 세 가지 사업에 58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신규 사업명	2004년 예산안	주요 사업명
계	5,835	
사이버노동상담센터운영	3,335	근로복지사업
중소기업실근무시간단축지원	500	근로복지사업
모성보호비용지원	2,000	고용평등사업

- 중소기업 실근무시간 단축 지원사업과 모성보호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이버노동상담센터운영사업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노동상담센터 운영에 대하여

-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방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세청의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를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 사업계획 자체가 전화상담입니다.

그런데 ‘사이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작 사업 내용은 전화상담인데도 외형만 그렇듯하게 포장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 점부터 바로 잡기 바랍니다.

- 둘째, 인력 운용 계획도 잘못되었습니다.

- 이 사업 예산은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절반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요구	조정	세 부 내 용
계	6,856	3,335	
계약직 인건비	1,260	97	65명을 5명으로 삭감.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해 기존 근로감독관 및 직업상담원 인력활용
임차료	2,000	1,000	평당 임차료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삭감
자산취득비	2,249	1,735	전산통신장비, 컴퓨터, 키폰
시설비	140	90	사무실칸막이, LAN 및 전화설치 등
기타경비	1,207	413	홍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여비 등을 각각 30~40%수준으로 인정

- 가장 많이 조정된 것이 인건비 항목입니다.

계약직 65명 중에서 5명만 인정받았기 때
문입니다.

- 노동부 전화민원 내역을 보면 상담센터에 투입될 인력은 노동업무에 대한 지식은 물론 축적된 경험이 상당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도 이를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선 잘못되었습니다.

- 노동부 전화민원의 주요내용
- 사건처리절차 상담(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체불 등)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질의 상담
- 구직 등록 및 구인 방법 등 안내
- 산재보상보험제도 안내
- 중대재해사고 신고절차 안내
-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등 설립 안내
- 민원처리 현황

구 분	전화	인터넷·서면
계(1,054,388건)	1,003,231건	51,157건
본부·지방노동상담실	713,737건	51,157건
본부·지방 각과	285,464건	

주 : 고용안정센터 등에 접수되는 전화민원 업무량 제외

-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 노동부가 산출한 소요 인원은 100명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 부족한 인원을 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근로감독관 증원인력과 기존의 근로감독관, 직업상담원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 소요인원 산출 근거>

구 분	업 무 량	소 요 인 원
전화상담	7,400건(일일기준)	76명 ※ 76명 산출근거 ○ 상담원 1인1일 처리가능 건수 97건(360분÷3.7분) ○ 7,400건÷97건 = 76명
인터넷·서면질의	189건(일일기준)	15명 ※ 15명 산출근거 ○ 상담원 1인1일 처리가능 건수 13건(480분÷36분) ○ 189건÷13건 = 15명
관리인력		9명
계		100명

- 그러나 5월 21일 제출한 291명의 근로감독관 증원 요청은 아직 까지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증원되더라도 이들을 당장 사이버노동상담센터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 국세청은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전화세무상담센터 상담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에서도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 노동 현장에서 베테랑급의 근로감독관을 업무 공백 없이 전환배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물론 이 사업의 시작 시점은 2004년 7월입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인력을 전환 배치한다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따릅니다.
- 셋째, 사업의 추진배경과 예산투입 대상 업무가 서로 다릅니다.
- 노동부가 이 사업의 지원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역입니다.

-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 노사정합의문(2002년 5월 6일)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관련 근로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원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에게 상담, 조언하거나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확충 방안을 강구한다.

- 그렇다면 이 사이버노동상담센터의 구성 목적과 사업 내용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취약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조언, 고충처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 그렇지만 노동부가 밝히고 있는 사업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 사이버노동상담센터 사업목적
- 노동 분야 민원을 단일전화번호로 통합하여 집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증진, 노동행정의 신뢰성 제고, 지방노동관서의 핵심역량 강화

-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업 목적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원 근거를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지원근거와 사업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사업을, 그것도 구체적인 인력 운용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제출해 놓고 관련 예산의 심의를 요청하는 노동부의 업

무 자세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의 연례적 계상 소홀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별	'03 예산	'04예산(안)	증 감	산 출 근 거
계	8,959	7,378	△1,581	
기타 재산수입	68	51	△17	근로자복지매장 교부취소이자(46) 각종 보조금 이자수입예상액(5)
벌금	485	1,193	708	과태료징수 증가 146% 증액 반영
기타경상 이전수입	8,382	4,291	△4,091	고용촉진 보조금 회수금(1,269) 청소년인턴(700) 임차보증금(587) 근로자복지매장(950) 과오납회수 등 기타수입(145)
기타 잡수입 등	24	1,843	1,819	지방관서(양산) 청사부지 매각 대금

-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장관도 세입 예산의 과소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 장관께서는 과거의 관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 그런데 2004년도 세입예산액 73억 7800만 원은 2003년도 세입 예산액 보다 15억 8100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결정액이 119억 3200만 원입니다.
- 그렇다면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약속하신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세입예산의 과소계상 문제가 지적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그때에도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계속 하시겠습니까?

(답변서)

○노동부장관 權奇洪

(金德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03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예산 편성은 당초 법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무리하게 반영하였고, 10월 말 현재 관련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추후에는 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질의)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수준의 타당성 여부 및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 분기 150만 원(월 50만 원) 산정근거는
 - 타 장려금의 지원수준(월 28만 원~60만 원)과 지원기간(6개월~1년)을 참고하되 근로시

간단축지원금의 지원기간이 장기간인 점(최소 1.5~5.5년)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근로자 1인당 신규채용에 따른 지원총액으로는 여타 장려금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임(최소 900만 원, 최대 3300만 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주5일근무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이며 추후 제도시행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의)

3. 한국노동교육원이 2년간 증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반복해서 '04년에 다시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강의동 증축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종전규정과 같이 예외규정이 있어야 하나 '01. 1. 5 관련규정의 삭제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자연보전권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제4호 나목 :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및,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것(삭제 '01.1.5)

○증축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는 21억 원으로 '02년에 10억, '03년에 11억을 반영하였으나 '02년 예산 10억 원이 위와 같은 사유로 불용됨에 따라 이를 '04년 예산에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의 변경여부를 면밀히 파악치 못하고 사업을 추진,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향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4. 한국노동교육원의 증축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어려워 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의 증가와 설계당시('93년) 예상치 못했던 노동행정공무원 교육위탁으로 강의실·토의실 등 관련시설의 증축이 필요합니다.

※ '99. 2. 8 노동행정공무원 위탁교육기관 지

정(한국노동교육원법, 법률 5879호), 공무원교육 비중('01년 2022명 20.7%, '02년 2459명 16.5%)

○현재 건설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축을 추진할 방침이며 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 과정에서 예산의 전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국회 및 기획예산처에 보고·협의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강의실·기숙사 보완,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축대 등 위험시설 보강 등

(질의)

5. 지자체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실적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부진하므로 체계적인 전문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노동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의 취업지원 업무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는 지자체 취업지원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자체의 관심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 2002년 취업실적 : 고용안정센터 19만 1685건, 지자체 13만 6038건(공공근로제외시 6만 2084건)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협의, 취업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이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동교육원 주관 집체교육 또는 지방노동청 단위에서 관할구역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교육하는 방안 등 검토·추진

(朴仁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실직여성가장 취업훈련사업 예산안이 지난해 해보다 9.6% 감액된 25억 원으로 감액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04년도 실직여성가장 훈련계획인원은 2200명으로 '03년도와 계획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다만 '02년도의 훈련생 1인당 훈련수당 평균

지급액이 약 25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훈련수당의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30→25만 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질의)
2. 실직여성가장 직업훈련생에게 훈련수당 20만 원을 신설하고, 훈련인원도 300명 정도 확대하여 2500명 선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실직여성가장 취업훈련생에게는 부양가족수, 재산세 등에 따라 10~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 수당 중에는 실직여성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양가족수에 따라 15만 원까지 가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훈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 다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10~40만 원의 훈련수당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수준이므로 훈련수당의 인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 인원확대와 관련, 여성의 실업률 감소 및 훈련실적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추가 확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 여성실업자 및 실업률

구 분	'98	'99	'01	'02	'03. 9
· 여성실업자수 (실업률)	486 (5.7)	448 (5.1)	284 (3.1)	241 (2.5)	231 (2.4)

- 훈련실적
1만 1329명('99) ⇒ 6,832명('00) ⇒ 3,893명('01)
⇒ 2,445명('02)

(질의)
3. 산재예방과 관련한 정부출연이 시작된 '97년 출연금 비율은 기금의 산재예방사업 지출총액의 0.43%에 불과했음에도 그후 출연금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올해 예산에는 0.32%, 내년에는 0.27%까지 떨어진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그동안 국회, 노·사 단체에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서 기금출연금의 3%까지의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도 매년 증액된 출연 예산안을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여건상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관계부처에 정부의 책무 이행 당위성을 피력하여 일반회계의 기금출연금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일반회계 출연 추이
 - '03년 : 요구 169억 원 ⇒ 계상 86.7억 원
 - '04년 : 요구 135억 원 ⇒ 계상 84.5억 원

(질의)
4. 노동부가 산재예방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요청한 135억 원 중 감액된 50억 5000만 원은 증액되어야 하며 증액된 전출금은 클린3D사업과 같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에 사업이 종결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일반회계 출연금 증액에 관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 135억 원 : 기금지출총액의 0.4%수준
-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증액되어 기금으로 출연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등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5. '04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예산은 제도 개선 이후인 7~9월 실적을 기초로 하여 427억 원 추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년도 체당금 예산을 증액하여 1526억 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 상정된 '04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중 체당금 예산(1098억 9700만 원)은 '03년 1월~4월 체당금 집행실적 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 그러나 내년도에도 금년 하반기와 같은 체당금 지급 추세가 계속될 경우, '04년 체당금 지급액은 당초 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 3/4분기 체당금 집행실적을 기초로 '04년도 체당금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갈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예산처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금액 가운데 적어도 직업능력개발사업비 110억 원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 당초 우리부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인 장애인공단의 인건비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비는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당국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 ※ '04년 요구액 : 공단 인건비(569명) 225억 원, 능력개발사업비 110억 원
 - '04년에는, '03년 20억 대비 100% 증액된 4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는 취지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일반회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의)

7.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사업비 20억 원과 산업인력공단산하 취업정보센터의 고용촉진사업비 118억 원이 고용정보운영사업(346-1611-220-301-1)의 동일한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각각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별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정보운영사업을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사업과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사업으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양 사업은 모두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정보사업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어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할 실익이 없습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양 사업 간 예산내역의 임의 변경사용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

행예산 편성 시 양 사업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비 간 예산이 혼용되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赫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취업유망분야 훈련의 훈련수당(식비 및 기숙사비)이 현실성이 없어 내실 있는 훈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동 훈련수당의 증액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금액이 실소요 비용 보다 낮아 훈련 실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식비는 '98년, 기숙사비는 '01년 이후 동결
 - ※ '02년도 기숙사비 실소요비용 조사 결과, 평균 22만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
- 따라서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 수준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의)

2.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자재취직훈련 및 정부위탁훈련에 있어서도 훈련수당을 인상하여 총 10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함을 지적하시고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취업유망분야 훈련의 훈련수당을 인상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실업자 재취직훈련 및 정부위탁훈련 수당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0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질의)

3. 국회 부대결의의 취지를 감안할 때 '04년 산전후휴가급여 지원금 437억 원의 2분의 1인 218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산전후휴가급여제도 도입 당시 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되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한 국회 부대결의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일반회계 부담금 20억 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함

○특히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모성 보호비용부담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4.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 불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일 자리를 통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지원사업으로
※ 사회적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
- 단기적으로는 참여단체의 기존 근로자 등을 동 사업 참여자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공공·공익적 분야에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하므로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하였습니다.
※ 단체에서 지원약정체결 3개월 이내에 고용된 적이 있거나, 자원봉사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장기적으로는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는 산업구조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동 사업이 새로운 고용창출사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실직빈곤계층의 자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양비(Envy, 프랑스 재활용기업)의 경우 580명 중 430명('00.9)을 실직빈곤계층으로 채용

(질의)
5.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기존의 봉사활동을 유급화 함에 따라 기존의 봉사활동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현행 지침상 참여단체의 기존 근로자 등을 동 사업 참여자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봉사활동을 유급화하

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
5.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04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03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4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동 사업의 추경예산 신청 결과(542개 단체, 4480명, 8개 시·도 제한)를 보면, '04년 예산규모(3000명)는 오히려 적다고 보여 집니다.
※ 9. 30현재 참여자는 목표(2000명) 대비 65.6%인 1312명을 선발(채용)
○또한 다양한 사례의 발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 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03년 추경에 비해 '04년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이에 따라 대상인원도 증가)확대 이외에도 예산편성 기간이 2배(6개월 → 12개월)로 늘었고 사회보험료(18억 원), 사업비(6억 원)가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질의)
6.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능대학의 노후 및 신기술 장비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학교법인기능대학의 장비노후율은 현재 38.2%로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장비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그간 장비보강을 위해 매년 5~1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 '04년 예산(안)으로 14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노후장비보강을 위하여 263억 원이 필요함.
○'04년 노후장비 보강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

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성남기능대학 개축관련 예산으로 설계비 5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는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성남기능대학은 1976년도에 건립되어 노후정도가 심한 상태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04년 예산(안)으로 설계비 5억 7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됨(총사업비 191억 원)

○성남기능대학 개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8. '03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반영(800억 원→수정 662억 원)했다가 미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무리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시정될 사항이라 하시면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지원규모 및 수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03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미실시 사유는 최근(8.29 이전)까지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미실시

○동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규모와 수준은 조기도입 사업장 비율(40%), 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창출효과(5.2%) 및 여타지원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9.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근로시간 단축사업과 유사한데 일반회계에 반영된 5억은 삭감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고용보험기금사업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근로자

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관련 교육·홍보사업은 중소기업에게 개정근로기준법, 인사노무관리 방식 변경을 교육·홍보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徐秉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과 구인업체개척사업은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 내년도 사업운용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도 사업운용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2. 그간의 해외취업실적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2000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구상이 타당하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외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 조직 및 인력이 전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구인업체 발굴 및 구인·구직자 연계를 위한 Net-Work이 형성되어야 하나, 그간 예산의 한계로 이러한 인적·물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여 해외취업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내년도 대폭적인 예산증가를 통해 해외취업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해외취업 Net-Work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외 구인개척 활동 등을 강화한다면 해외취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 : 1500명 내역
 - 해외취업 IT인력 맞춤형연수·취업 프로그램 운영 : 500명
 - 채용예정 간호사 연수과정 운영: 500명
 - 해외취업 한국어강사 맞춤형연수·취업 프로그램과정 운영 150명
 - 항공승무원 연수과정 운영 : 300명
 - 개도국 파견 직업훈련 전문가 연수과정 운영 : 50명
- ※ 해외인턴과정 운영 : 500명

· 해외에 있는 인턴채용 외국업체 및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장 대상으로 추진

(질의)
3. 우선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해외취업연수와 인턴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해외인턴사업 30억과 연수과정 사업비 6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해외 구인업체는 IT분야, 의료분야 등에서 어학능력과 경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요청하나 해외취업희망자 중 대다수가 언어능력과 경력요건이 미비하여 취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02년 1126건 구인, 1622건 알선 → 295 취업확정(출국)

○따라서 취업 유망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어학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장이나 국내에 지사가 있는 외국기업 등에 직접 고용되는 전단계로써 인턴제가 활용되도록 해외 인턴사업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4. '04년도 세입예산액을 2003년도 보다 15억 8100만 원 적은 73억 7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시 세입예산액 과소계상을 여러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과태료 수입의 경우도 전년보다 146%증액 : '03년 4억 8500만 원 → 11억 9300만 원

○그럼에도 내년도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은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 회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 IMF이후 확대되었던 보조금예산 축소 등에 따라 최근 대폭 감소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로 금년 9월 현재 세입수납액은 26억 원으로 '02년도에 93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수납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9월	'04 예산안
계	19,799	19,411	9,250	2,583	7,378
기타경상이전수입	15,234	9,275	6,817	1,998	4,291
과태료	207	485	798	474	1,193
기타 수입	4,358	9,651	1,635	111	1,894

※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위함으로 징수결정액 기준이 아니라 수납액 기준으로 편성함이 타당

<참 고>

2004년도 세입예산에 추저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별	'04예산액	예 산 내 역
계	7,378	
기타 경상이전수입	4,291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회수 1,269 ○근로청소년아파트 보조금 회수 640 ○청소년인턴 보조금 회수 700 ○근로자복지매장 보조금 회수 950 ○임차보증금 회수 587 ○과요금금 회수 등 기타수입 145
벌금 (과태료수입)	1,193	○과태료 증가 추세를 감안 전년대비 146% 증액 반영
토지매각대	1,800	○양산 청사부지 일부 매각 대금 ※ 산재기금에서 매입 계획
기타 재산수입	51	○근로자복지매장 교부 취소이자(4600만 원) 및 각종 보조금 이자수입 예상액
기타 잡수입	43	○'02년 수납액 3900만 원 기준 10% 증액

(질의)

5.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시행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범사업의 평가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동 사업이 '03년 7~8월 중 신청단체 접수 및 선정을 하고 '03년 9월 이후 인원투입이 개시되었고, 사업시행 초기인 관계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03년 11월 중 동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련부처 간 협의('03년 9월 구성된 사회적일 자리 추진기획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04년에도 시범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03년) 2000명, 73억 원, 8개 시·도 → ('04년) 3000명, 242억 원, 전국단위

○ 동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03~'04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6.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예산 집행실적이 9월 말 현재 370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726억 원의 0.5% 수준으로 당초에 예상하였던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금년 7~8월에 사업공고, 신청접수 및 선정을 하고 9월 이후 참여자가 투입된 점, 지원금이 매월 후불형식으로 지급되는 측면 때문에 예산집행실적은 매우 낮은 것입니다.

○ 따라서 예산은 10월 이후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며 사업성격상 일정부분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 '03년 9월 말 현재 1312명 투입(66%)

(질의)

7. 간병인 지원사업 중 어느 것이 사회적일자리이고 어느 것이 자활근로사업인지 구분할 수 있는냐고 지적하시면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 두 사업이 모두 빈곤계층 및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지원대상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중 비취업대상자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수급자중 취업대상자, 일반구직자 중 취업취약계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8. 노동부에서는 아직도 이 사업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산하기관장도 혼동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의미하고, 안정적으로 존립 가능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예컨대 시범사업 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이 신청사업 488개의 17.6%인 86개를 차지하여 대부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인데 내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일자리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개념과 추진방향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제도 도입초기인 관계로 이에 대한 홍보와 우리나라사례를 축적한 모형개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사회적일자리 개념 :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 사회적일자리 추진방향 :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일자리로 전환 → <2단계> 새로운 사업개발 → <3단계> 사회적기업 육성

○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법하게 고용토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더라도 공공기관이 다루기 곤란한 외국인근로자 상담, 한국어 교육 및 국내적응 지원 등 권익보호 관련 서비스를 민간차원에서 제공하게 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9. 사회적일자리 성격이 모호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내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72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시행 초기인 관계로 '03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의 신청결과를 보면 8개 시·도, 2000명 목표에 542개 단체, 4480명의 구인요청이 있었습니다.

※ 9. 30현재 참여자는 목표(2000명) 대비 65.6%인 1312명을 선발(채용)

- 따라서 '04년 시범실시를 1년 기간, 전국단위로 시행할 계획인 바, 이를 감안하면 '04년 지원인원(3000명)은 오히려 적다고 보여집니다.

※ 다양한 사례의 발굴,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필요
· '03.7.25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광주지역이 제외된 사유 정보공개 요청

○참고로, '03년 추경에 비해 '04년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 지역확대에 따라 지원인원이 1.5배 증가(2000 → 3000명)
- 지원기간이 2배(6개월 → 12개월)로 늘었고
- 사회보험료(18억 원), 사업비(6억 원)가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질의)
10. 사이버노동상담센터 사업은 사업계획 자체가 전화상담인데 '사이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만나는 것이 아닌 단일 전화와 인터넷으로 전국의 노동관계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가칭으로 '사이버 노동상담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공식명칭은 향후 공모,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상담센터에 적절한 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질의)
11. 사이버노동상담센터에 투입될 인력은 노동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계약직을 채용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당초 가칭 '사이버노동상담센터' 소요인력 100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계약직 인건비를 65명(12억 6000만 원)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기관신설에 필요한 최소인력(5명, 9700만 원)만이 인정하였습니다.
※ 계약직 65명을 제외한 35명은 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이었음

○향후 근로감독관 증원 및 기존 민원상담인력을 활용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
12. 근로감독관이 증원되더라도 이들을 당장 사이버노동상담센터에 배치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필요한바, 이들을 6개월 만에 상담센터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행자부와 협의 중인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이들을 지방관서에 배치토록 하고 상담센터 인력은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한 일정경력 이상의 기존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칭 '사이버노동센터' 설립은 지방관서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는 전화상담 및 인터넷·서면질의를 집중 처리하여 업무처리를 효율화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지방관서에서 동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등을 상담 센터 인력으로 충원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13. 사이버노동상담센터사업의 지원근거가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의 합의인바 사업내용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취약근로자의 상담과 조언, 고충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노동부가 밝히는 사업목적은 전혀 다르므로 사업목적은 바꾸거나 지원근거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가칭 '사이버노동상담센터'의 사업 목적은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것이나 단순 반복적인 민원처리 업무를 상담센터에서 집중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여유인력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등에 노동행정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향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가 상담센터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되도

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의)

14. 사이버노동상담센터사업은 구체적인 인력운용 계획도 세워지지 않는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제출하는 노동부의 업무자세는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 당초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는 바, 향후 근로감독관 증원 추진과 기존인력의 활용등을 통하여 상담센터가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세부운영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11월부터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吳慶勳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 관련하여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의 지원금액이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하시고 훈련비의 현실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에 확정된 훈련비는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훈련실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적정훈련비 산출을 위하여 현재 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 의뢰해 훈련비용 단가를 산출중에 있으며 동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의)

2. 공공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 사업에 2003년도 예산은 153억 1900만 원이었으나, 2004년도 예산액은 7억 6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04년도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 잠정 중단에 따라 '03년도 신규 건립 3개소의 부대설비 및 유구비품비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의 직접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규모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육아부담 해소와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답변)

○그렇습니다.

(질의)

3.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장 내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규모 사업장에 모두 설치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답변)

- 그동안 공공직장보육시설 20개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04년에 추가건립을 잠정 중단하게 된 이유는 동 시설들이 건립 취지에 맞게 영세규모사업장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해소를 통한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동 시설의 운영평가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3. 8~12월)을 실시중이므로, 동 결과를 참조하여 추가 건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의)

4.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의 2003년도 7월 말 현재 집행·성과 내역을 보면 153억 1900만 원 중 집행실적이 11억 87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달성률은 7.7%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003년도 사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잠정 중단한 것인가?)

(답변)

- '03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건립지역 선정 및 부지매입이 지연된 결과이며 '04년 신규건립을 중단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03년도 사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질의)

5.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노동부는 5개소의 시설 건립부지 선정과 매입과정에서 4개소가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부지 매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보상비가 낮기 때문이라면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매입계획을 세우는 등 소요예산 추계를 한 것인가?)

(답변)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거쳐 건립지역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부지 실사, 부지선정, 계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실제 계약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년도에는 7월 말 건립지역이 최종 결정되어 10월 현재 군산, 제주 등 2개소는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이고 고양, 서울강북 등 2개소는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

6. 노동부는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육아부담 해소와 취업활동 보장 등 고용안정에 기여하는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는데 사업계획수립이나 추진시 사업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는 있는가? 있다면 그 결과는?

(답변)

○우리부에서는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위해 '03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03년 12월 말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연구명 :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 연구기간 : '03년 8~12월

(질의)

7. 2002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무상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및 투자여력이 부족한데 주된 요인이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및 유도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8. 2003년 7월 말 현재 직장보육시설 무상지원 실적이 7.7%에 불과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소요예산을 추계하기 때문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02년도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기업에서

지원요건 개선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03년도 예산은 동 조사결과와 제도개선계획을 토대로 편성하였으며 '03년 10월 현재 9개사 5억 6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개사 6억 800만 원이 심사 중에 있는 등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예산 26억 대비 최소 11억(42.3%)이상 집행전망)

※ '03년 1월 제도개선 내용

- 지원한도액 인상 : 9500만 원 → 1억 3500만 원
- 시설전환비 : 7000만 원 → 1억 원
- 유구비품비 : 2500만 원 → 3500만 원
- 무상지원 및 용자 병행 불가 → 병행 가능
- 유구비품 소요연수 결과시 교체비용 지원 (신설)

(질의)

9. 출산휴가급여 예산으로 '02년도에 1232억 1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집행실적은 226억 2000만 원으로 달성률이 18.3%에 불과함을 지적하시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02년은 출산휴가급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연도로 예산편성 당시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추계함으로써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제도시행에 따른 생산차질과 업무마비를 우려한 사업주의 부정적 인식, 불이익 처우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 출산율 저하('01년 1.30명 → '02년 1.17명)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0. 산전후휴가 사용실적 부진 원인으로 노사의 인식부족, 생산차질과 업무마비를 우려한 사업주의 휴가기피, 동료 근로자의 업무가중에 대한 심리적 부담, 대체인력 지원방안 미흡, 휴가사용으로 인한 소득저하 및 복귀 후 불이익 처우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하시고 사업계획수립 당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여성근로자들이 산전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계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그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제도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의)
11. 산전후휴가제도 이용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모성보호비용의 적정한 사회분담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모성보호비용의 적정한 사회분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수행자 :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
-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모성보호비용의 적정한 사회분담수준과 추가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사회분담 수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성보호제도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매년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03년 위원급 의료기관, 10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102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법 위반 사업장 67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함

(吳世勳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아무런 평가 없이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04년 예산은 24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축소 편성하고 내년에 사업평가를 통해 추경을 편성하거나 '0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3년 사업결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동 사업 신청결과(542개 단체, 4480명, 8개 시·도 제한)를 보면 '04년 예산규모(3000명)는 오히려 적다고 보여집니다.
※ 9. 30현재 참여자는 목표(2000명) 대비 65.6%인 1312명을 선발(채용)

○또한 다양한 사례의 발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 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예산(242억 원)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03년 추경에 비해 '04년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확대에 따라 지원인원이 1.5배 증가(2000→3000명)
- 지원기간이 2배(6개월 → 12개월)로 늘었고
- 사회보험료(18억 원), 사업비(6억 원)가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천안지역에 건립 예정인 충청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17억 원이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위원님의 지적대로 충청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예산이 가급적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도에 충청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건평(1000평)에 표준건축비(㎡당 90만 원)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14억 8500만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표준건축비(㎡당 90만 원)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인 14억 8500만 원 한도 내에서 '04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질의)
3 '03년 9월 말 현재 신용보증사업의 대위변제지급액과 예산대비 집행률에 대해 물으시면서, 올해 대위변제준비금 5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03년 9월 현재 대위변제금 지급액은 49억 원으로 예산 54억 원 대비 집행률은 91.1%이며, 올해 대위변제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의)
4. 신용보증사업의 '04년도 소요예산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년도 대위변제준비금은 99억 원으로 대체로 내년도 소요액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03년도 대위변제금 소요 부족액을 이월 집행할 경우 부족이 예상됩니다.

(질의)
5. 최근 경기하락 여파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위변제액이 당초 예상보다 뛰어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지적대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위변제액이 당초 예상 54억 원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6.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대부를 예로 드시면서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조차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대위변제액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위변제액은 과거 결손치를 기초로 추정해야 하나, 근로자 신용보증사업의 경우 '02년 시행당시 경험치가 없어 정확한 추계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03년도 예산도 사업 시행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해 6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질의)
7. 올해(2003년) 신용보증지원사업 예산부족액 71억과 '04년도 부족액 7억 원을 합한 78억 원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내년도로 이월하여 지급하기로 금융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03년 8월)
○내년에는 우선 연체관리, 채권회수 등을 강화해서 대위변제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위변제액 발생 추이를 고려, 연도 중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질의)
8. '04년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대위변제 예산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신용보증사업의 취지로 볼 때 일반회계 출연이 바람직하나, 예산출연이 어려울 경우 기금 내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의)
9. 복권판매수익이 주된 수입인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근로자복지에 대한 재정지원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위원님의 지적대로 신용보증사업은 일반회계 출연과 보증료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의 증액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내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차선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10. 대위변제금의 증장기 소요를 감안하여 준비금 항목을 설치하여 별도 자금을 조성하거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위원님의 지적대로 정부출연 등으로 기금 조성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행 근로자 신용보증사업은 별도 기본자산 없이 당해연도 소요액만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지급불능 등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기금에 여유재원을 적립하는 것은 재정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질의)
11. (신용보증지원사업에 있어)적정 연체율, 목표 구상권 회수비율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지적하신 내용을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12.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

○금년도에 이미 은행·신용카드 연체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했으며, 지적하신 사항을 개발·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의)
13. 신용보증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년 예산에 비정규직 인력 41명 중 1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상채권 회수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채권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공단은 연체자 관리, 채권회수 소송업무 등에 주력하여 업무 효율성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질의)
14. 신용보증지원사업에 있어 구상채권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구상채권회수율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연구용역 발주 여부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위원님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대책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15. 현행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상에는 채용전 3개월과 채용후 6개월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다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운용 중 바, 이 ‘감원방지기간’을 일정 정도 연장하여 순고용효과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감원방지기간은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에는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이외에 사업장내 여타 근로자를 감원할 수 없도록 설정된 기간입니다.
○감원방지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감원 위험성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동기간 동안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일본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및 기타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 채용시 ‘특정구직자고용

개발조성금’을 1년~1.5년 지급하고 있으나 감원방지기간은 고용전후 각 6개월임

(질의)
16.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활성화는 고용안정 또는 순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감원 방기간의 연장과 같은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현 감원방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및 제도 활용률 제고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의)
17. 현재 고용조정사업의 일환으로 운용중인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지원요건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유사함에도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차제에 두 장려금을 통합하여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향후 지원요건이 유사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재고용장려금을 통합토록 하겠습니다.(’04년 중 추진)

(손在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대구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27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위원님의 지적대로 대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예산이 가급적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에 우리부는 건평 2500평에 표준건축비(㎡당 90만 원)를 적용하여 산출된 37억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고 국회심의 결과 26억 원이 ’03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04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요구액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표준건축비(㎡당 90만 원)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03년도 당초 신

청금액 37억 원 중 이미 반영된 26억 원을 뺀 11억 원 한도 내에서 '04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洪文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 동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취약계층(고령자, 여성, 청소년 등) 지원근거를 토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17조(여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등

○ 향후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03~'04년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관련법령(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2.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는데 이에 대한 통계가 정확성이 없어 비체계적인 사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대상은 장기실업자를 포함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대상자 발굴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신청자 중 본인의 참여의사, 직업상담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장기실업자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3.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 대상과 중복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는 있으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 각종 고용촉진 장려금 및 지원금의 사업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및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거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이러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공익적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지원 대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자에 대한 정확한 상담 등을 통해 어떤 고용서비스(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또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가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4.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를 보면 중장년층의 여성 장기실업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과 참가자 현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 중장년층의 여성 장기실업자의 경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 현황과 유사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 성격 등에서 양 사업 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비교>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사업성격	'04년 예산(안)
·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 (지자체)	· 저소득 실직자	· 한시적인 실업대책 · 행정보조적 업무를 포함한 모든 분야	1000억 원 (국고 5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노동부	· 실직자(취업취약계층 우선) · 취업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실업률 안정시기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공·공익서비스 분야	242억 원

(질의)

5.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에게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할 것인지 여부 및 비영리단체에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 참여기관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기간 및 한도에 대해서는 '03~'04년 시범사업 동안에는 6개월씩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 동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원기간 및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절차의 투명성, 지속적인 지도·점검활동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평가 등을 실시하고, 반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질의)

6.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8개 사업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의 수를 줄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사업 참여단체에서도 몇가지 유형화된 전략 사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다만 시범사업 기간중에는 많은 사례발굴이 요구되므로 지역별·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

7. 사이버노동상담센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어 민원인과 지방노동관서 모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과 세밀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

- 가칭 '사이버노동상담센터'는 전국의 노동관계 민원을 단일 전화와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처리 업무를 상담센터에서 집중처리하여 업무의 효

율을 제고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행정의 핵심업무에 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담센터 주요업무 : 각종절차 안내(부당해고, 체불 등 사건처리, 노조설립, 재해신고 등), 법령질의, 제도안내(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일반법령 및 제도관련 단순 전화민원 상담, 인터넷·서면 질의 등을 처리

- 향후 민원인들의 상담센터 접근을 쉽게 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One-Stop으로 이루어져 이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되도록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 등을 통하여 세부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근로유인 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 자활사업 모두 매년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03. 8월 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는 '05년부터 반영될 것이고, '04년까지는 현재의 자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04년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 자활사업대상자(취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로서 지자체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과다 계상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한 급여체계 도입, 자활프로그램 내실화 등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입니다.
 - 이를 위해 '03. 5 보건복지부와 '자활정책기획팀(T/F)' 구성하여 운영중,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
 -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추진('03. 8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공동연구)
- 그동안 자활사업 예산은 수요에 맞추어 감축 편성하여 왔으나, '04년 예산도 '03년 대비 23.1% 감액하였습니다.
 - ※ 예산규모 추이 : 970억 원('01) → 390억 원('02) → 145억 원('03) → 111억 원(안)('04)

○자활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선 자활 대상자의 근로의욕 및 기초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자활직업 훈련, 자활취업촉진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질의)
9.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사업이 40대 이상 실직자의 중소기업체로의 지원 기피, 홍보 부족, 업무 간 협조체제 미흡, 노동부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며 지원 수준 향상 등 제도 활성화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동 장려금은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한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 1년간 총 4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3. 10. 18 현재 150억 원 예산 중 1억 100만 원 집행(52개소 62명)

○주요 부진원인은 동 사업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주에 대한 홍보 부족, 지방노동관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업무간 협조체제 미흡 등입니다.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배포(2만부), 지방관서 순회 설명회 개최(6.19~20), 사업주·훈련기관과의 간담회 활성화 등의 조치를 추진 중이며, 특히 중장년훈련수료자 DB 구축('03. 10), 훈련기관과 고용안정센터간에 업무연계 등으로 미취업 중장년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훈련직종도 서비스·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02년 51.8%) 지원대상 업종을 전 업종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기업규모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지원업종 및 지원대상 기업규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

(질의)
10. '03년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집행실적이 '01년 및 '02년에 비하여 저조한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여성재고용장려금과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의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저조한 것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경기가 좋지않아 신규채용률이 낮아 데 주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 경제성장률 : 6.6%('02. 2/4분기) → 1.9%('03.2/4분기)

※ 취업자 증감률 : 2.6%('02.6월) → -0.6%('03년 6월)

- '03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기 불황외에 구조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1. 자연퇴직률 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급여자수의 90%를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목표로 잡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므로, '04년 육아휴직장려금 목표인원을 7000명에서 6300명으로 줄이거나 육아휴직급여 목표인원을 7778명으로 늘리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와 육아휴직장려금대상자수간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04년에 육아휴직급여자수와 육아휴직장려금대상자수를 동일하게 산정한 것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이 증가하여 육아휴직급여자수와 장려금대상자수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질의)
12. 직장내 성희롱이 근절되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되는 바 비디오 제작 등 형식적 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예산 책정에 배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우리부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 제도가 아직 도입 초기이고 성희롱의 심각성이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에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은 감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 '03년 예산 3억 5000만 원, '04년 조정 2억 만 원(요구 4억 1000만 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부는 앞으로도 형식적 사업은 지양하고, 일반 사업장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 근절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는 필요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